

인천지방법원 2018. 12. 20 선고 2018가단21301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2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을 수거하고,

나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조동은

별지